

선진국 환경과세 부과

국내수출 10억불이상 타격

선진국들이 환경과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수출이 2.7%,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이상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공부와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몬트리올의 정서 등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한 일련의 국제환경협약들이 속속 발효되고 美國, EC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입법이 강화돼 국내산업 및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책

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金俊漢 KIET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이 공해방지비용이 낮은 수입상품에 대해 일종의 환경상계관세인 「공해비용균등화稅」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美國과 日本, EC 3개지역(91년기준 10억2천1백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對美수출이 2%, 對日수출이 4.75%, 對EC수출이 1.7%씩 감소하고

품목별 수출감소율은 시멘트 13%, 철강-금속제품 10.1%, 종이제품 9%, 화학제품 7.5% 순으로 환경규제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형으로 산업구조전환, 환경산업육성, 효율적인 공해방지제도의 수립등의 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강화

UR·한미협상 대비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 세관이 통관과정에서 직접 단속 및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등 수출물품은 신속한 애프터서비스의 필요에 의해 장기간 보세창고에 보관해야 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UR및 韓-美 지적재산권 협상 등에 대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 물품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통상마찰이 유발되고 불공정

국가로 간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중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세관이 압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또 관세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 압수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과 등록하지 않은

상표권이라 할지라도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적재산권중 전문적인 분야로 세관단속이 어렵고 친고죄로 돼있는 서적 음악 미술 등의 저작권은 세관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 침해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면 세관이 이의 통관을 보류토록하고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은 세관업무부담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